

# 가공식품위원회 기본기준 및 회원기준

## <공통 원칙>

1. 생명의 건강과 안전, 생태보전을 먼저 생각한 가공식품을 생산한다.
2. 생산자 공동체로 생산되는 농가공 식품을 우선으로 한다.
3. 식품안전에 있어서 보다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물품을 개발한다.
4. 원부재료 및 가공, 유통과정은 언제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취급 기준(원부재료)>

1. 생명농업실천위원회의 1차 농수축산물의 취급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2. 가농회원이 생산한 국내산 유기순환 생명농산물 사용을 최우선으로 한다.
3. 수입농산물 사용을 금지한다. 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의 경우는 유기농산물을 사용한다.
4. 유전자조작(GMO) 농산물 사용을 금지한다.
5. 방사선 처리한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6. 경화유 사용을 금지한다.
7. 산화방지제, 향미증진제(글루타민산나트륨), 합성식품첨가물(착향료, 착색료, 감미료, 발색제, 보존료, 표백제, 살균제)은 식품의 제조, 가공 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물성유지를 위해 최소로 사용하는 경우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기준에 의한다.

## <기준의 적용(운영)>

1. 안정성확보를 위해 각 방면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한다.
2. 품목, 분과별로 생산규정/생산기준/가격기준/출하제재를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 적용이 가공식품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위배되면 안된다.
3. 환경 친화적인 포장 기준을 마련한다.

<2012. 3.6 가공식품소위원회 총회 개정>

4. 정회원과 비회원인 협력회원, 일반업체로 구분한다.
  - ① 정회원은 가톨릭농민회 회원으로서 분회 활동을 하며 교구본부(연합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② 가농/우리농에 물품 나눔되는 품목이 회원이 자가 생산한 농산물 또는 가톨릭농민회원과 지역 내 계약 재배된 농산물이 60% 이상인 정회원의 물품을 우선 취급한다.
5. 우리농과의 협력모임을 통하여 운영 전반에 대해 수시로 논의한다.
6. 물품의 검사, 물품의 관리(보관과 유통), 신규물품의 선정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수립한다.

7. 모든 가공품은 식품위생법 관계 법규에서 규정하는 물품명, 영업허가(신고)번호, 내용량, 성분 및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보관방법, 제조원 등 표시사항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내수공업에 의하여 영업허가(신고)번호의 취득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생명농업실천위원회의 자체기준에 맞는 물품을 생산한다.
8. 모든 물품은 연 1회 분회와 교구본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9. 위원회는 생산자에 대하여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출하 정지 등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0. 각 교구 가공식품위원회 및 생산자모임의 회의결과는 진행 직후에 전국가공식품위원회로 보고한다.

2010년 3월 30일 가공식품위원회 총회 제정  
2011년 4월 15일 생명농업실천위원회 개정  
2012. 3. 6 가공식품소위원회 총회 개정

# 가공식품위원회 분과별 생산규정

## 1. 건강분과

### 생산 규정(총론)/

1. 생산과 소비의 원활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생산현황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2. 생산품목의 품질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서로의 생산과정을 공개하여 공동 발전을 모색한다.
3. 새로운 품목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생산 기준/

1. 원재료에 있어 가농회원이 생산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을 사용하는 생산자가 출하 시 최우선한다.

유기가공인증을 받은 가공생산자는 자가생산 유기농산물, 회원생산 유기농산물, 외부 유기농산물 순으로 사용해야 한다.

2. 품목이 경합 시 그 원재료의 비율이 가농회원의 1차 농산물 사용 비중이 높은 품목을 우선한다.
3. 자가품질검사서를 연 1회 이상 제출한다.
4. 원부재료에 있어 국내 미 생산품목은 그 취급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

### 가격 기준/

1. 가격은 품목별로 1물1가를 원칙으로 한다.
2.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에 따른 가격 차등을 둔다.
3. 출하량과 가격은 연초에 결정한다.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경우 생산지교구 추천, 교구간 협의 및 도농협력모임을 통해 협의 조정한다.
4. 출하 가격은 물류 소비자 도착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5. 유기가공식품 인증 품목은 별도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 출하 제재/

1. 모든 회원은 전국본부에 회비 및 생명운동 기금을 납부하고 연 1회이상 전국본부 /교구본부 주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2. 모든 품목은 교구본부 가공식품위원회를 통하여 출하 요청하고 전국 가공식품위원회는 이를 도농협력모임과 논의하여 그 출하 여부를 결정한다.
3. 출하 제재는 1개월 출하 정지, 3개월 출하 정지, 영구 출하 정지로 나눈다. 출하 제재는 분과별로 논의하여 분과장이 이를 운영회의에 요청한다.

## 2. 농산분과

### 생산 규정(총론)/

1. 생산과 소비의 원활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생산현황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2. 생산품목의 품질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서로의 생산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공동 발전을 모색한다.
3. 새로운 품목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생산 기준/

1. 원재료에 있어 가능회원이 생산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논지엠오**를 사용하는 생산자가 출하 시 최우선한다.
2. 품목이 경합 시 그 원재료의 비율이 가능회원의 1차 농산물 사용 비중이 높은 품목을 우선한다.

**(원산지확인서, 원료수불부, 생산작업일지가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 가격 기준/

1. 가격은 품목별로 1물1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특수성이 인정되는 품목에 한해 별도로 논의한다.
2.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에 따른 가격 차등을 둔다.
3. 출하량과 가격은 연초에 결정한다.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경우 **생산지교구 추천, 교구간 협의 및 도농협력모임**을 통해 협의 조정한다.
4. 출하 가격은 물류 소비자 도착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5. 유기가공식품 인증 품목은 별도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 출하 제재/

1. 모든 회원은 전국본부에 회비 및 생명운동 기금을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전국본부/교구본부 주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2. 모든 품목은 교구본부 가공식품위원회를 통하여 출하 요청하고 전국 가공식품위원회는 이를 도농협력모임과 논의하여 그 출하 여부를 결정한다.
3. 출하 제재는 1개월 출하 정지, 3개월 출하 정지, 영구 출하 정지로 나눈다. 출하 제재는 분과별로 논의하여 분과장이 이를 운영회의에 요청한다.

### 3. 다류분과

#### 생산 규정(총론)/

1. 생산과 소비의 원활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생산현황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2. 생산품목의 품질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서로의 생산과정을 공개하여 공동 발전을 모색한다.
3. 새로운 품목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생산 기준/

1. 원재료에 있어 가농회원이 생산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을 사용하는 생산자가 출하 시 최우선한다.

자연채취 원재료는 관행농법 재배지와 아스팔트 도로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항공방제를 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2. 품목이 경합 시 그 원재료의 비율이 가농회원의 1차 농산물 사용 비중이 높은 품목을 우선한다.
3. 일체의 첨가물을 넣지 않는다.
4. 원료도 제조유통기한(2년)을 넘길 수 없다. 기한을 넘은 원료는 폐기처분한다.
5. 원료 및 포장재, 자가품질검사서 등 관련 서류를 연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 가격 기준/

1. 가격은 품목별로 1물1가를 원칙으로 하되 제다법, 생산시기, 생산지역의 차이를 존중한다.
2.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에 따른 가격 차등을 둔다.
3. 출하량과 가격은 연초에 결정한다.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경우 생산지교구 추천, 교구간 협의 및 도농협력모임을 통해 협의 조정한다.
4. 출하 가격은 물류 소비자 도착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5. 유기가공식품 인증 품목은 별도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 출하 제재/

1. 모든 회원은 전국본부에 회비 및 생명운동 기금을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전국본부/교구본부 주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2. 모든 품목은 교구본부 가공식품위원회를 통하여 출하 요청하고 전국 가공식품위원회는 이를 도농협력모임과 논의하여 그 출하 여부를 결정한다.
3. 출하 제재는 1개월 출하 정지, 3개월 출하 정지, 영구 출하 정지로 나눈다. 출하 제재는 분과별로 논의하여 분과장이 이를 운영회의에 요청한다.

## 4. 발효분과

### 생산 규정(총론)/

1. 생산과 소비의 원활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생산현황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2. 생산품목의 품질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서로의 생산과정을 공개하여 공동 발전을 모색한다.
3. 새로운 품목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생산 기준/

1. 원재료에 있어 가능회원이 생산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을 사용하는 생산자가 출하 시 최우선한다. (산야초 등 자연채취 원재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다)
2. 품목이 경합 시 그 원재료의 비율이 가능회원의 1차 농산물 사용 비중이 높은 품목을 우선한다.

### 가격 기준/

1. 가격은 품목별로 1물1가를 원칙으로 한다.
2.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에 따른 가격 차등을 둔다.
3. 출하량과 가격은 연초에 결정한다.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경우 **생산지교구 추천, 교구간 협의 및** 도농협력모임을 통해 협의 조정한다.
4. 출하 가격은 물류 소비자 도착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5. 유기가공식품 인증 품목은 별도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 출하 제재/

1. 모든 회원은 전국본부에 회비 및 생명운동 기금을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전국본부/교구본부 주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2. 모든 품목은 교구본부 가공식품위원회를 통하여 출하 요청하고 전국 가공식품위원회는 이를 도농협력모임과 논의하여 그 출하 여부를 결정한다.
3. 출하 제재는 1개월 출하 정지, 3개월 출하 정지, 영구 출하 정지로 나눈다. 출하 제재는 분과별로 논의하여 분과장이 이를 운영회의에 요청한다.

## 5. 장류분과

### 생산 규정(총론)/

1. 생산과 소비의 원활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생산현황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2. 생산품목의 품질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서로의 생산과정을 공개하여 공동 발전을 모색한다.
3. 새로운 품목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생산 기준/

1. 원재료에 있어 가농회원이 생산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을 사용하는 생산자가 출하 시 최우선한다. 수급이 부족할 경우 교구본부와 논의한다.
2. 품목이 경합 시 그 원재료의 비율이 가농회원의 1차 농산물 사용 비중이 높은 품목을 우선한다.
3. 소금은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한다.
4. 지하수 사용 시 매년 수질검사서를 제출한다.
5. 채래장류일 경우 황국균의 사용을 금지하며 장류는 6개월 이상 숙성시킨 후 출하한다.
6. 메주는 백태 7kg(소두1말)을 기준으로 하고 3~5덩이로 한다.

### 가격 기준/

1. 가격은 품목별로 1물1가를 원칙으로 한다.
2.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에 따른 가격 차등을 둔다.
3. 출하량과 가격은 연초에 결정한다.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경우 생산지교구 추천, 교구간 협의 및 도농협력모임을 통해 협의 조정한다.
4. 출하 가격은 물류 소비자 도착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5. 유기가공식품 인증 품목은 별도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 출하 제재/

1. 모든 회원은 전국본부에 회비 및 생명운동 기금을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전국본부/교구본부 주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2. 모든 품목은 교구본부 가공식품위원회를 통하여 출하 요청하고 전국 가공식품위원회는 이를 도농협력모임과 논의하여 그 출하 여부를 결정한다.
3. 출하 제재는 1개월 출하 정지, 3개월 출하 정지, 영구 출하 정지로 나눈다. 출하 제재는 분과별로 논의하여 분과장이 이를 운영회의에 요청한다.

## 6. 수산분과

### 생산 규정(총론)/

1. 생산과 소비의 원활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생산현황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2. 생산품목의 품질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서로의 생산과정을 공개하여 공동 발전을 모색한다.
3. 새로운 품목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4. 생산품목의 최초 출하시 중금속 및 방사선 검사를 받고 결과 서류를 제출한다.

### 생산 기준/

1. 원재료에 있어 가능회원이 생산한 수산물을 사용하는 생산자가 출하 시 최우선한다.  
(단, 어획한 수산물은 예외로 한다.)
2. 항생물질, 화학첨가물을 사용한 수산물은 취급하지 않는다.
3. 원산지과 생산과정이 명확하고 투명해야한다.
4. 품목이 경합 시 그 원재료의 비율이 가능회원의 1차 수산물 사용 비중이 높은 품목을 우선한다.

#### 1) 원료

(1) 어패류 - 국내 연근해산만 사용한다.

- 조개류, 갑각류, 어류, 전복, 새우, 멸치, 고등어 등

(2) 해조류 - 국내 연근해산만 사용한다.

- 미역, 김, 다시마, 매생이 등

( 원료 (1),(2)에 대한 수산물, 젓갈류, 건어물류)

(3) 소금 - 국내산 천일염만 사용한다.

(4) 기타 수산물

- 연근해산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예외조항 - 원양산국적선(한국), 원양산수입산 수산물도 취급이 가능하지만 수입산(가공에 필요한 선동품)의 경우 가공을 국내에서 해야 한다.

▶ 건어물 : 황태, 황태채

▶ 어묵류 : 옛날어묵, 두부어묵, 찢어묵, 모듬어묵 등

#### 2) 부재료

▶ 천일염 : 국내산만 사용가능(원산지표기)

▶ 양념 : 국내산만 사용가능

#### 3) 첨가물



▶ 기본적으로 발암성 유독독성, 알레르기성 등의 위험이 있는 화학조미료, 화학첨가물은 사용을 금지한다.

- 화학첨가물 : 착색료, 방부제, 산화방지제, 표백제, 감미료, 발색제 등

- 화학조미료 : 글루타민산나트륨(MSG)

### 가격 기준/

1. 가격은 품목별로 1물1가를 원칙으로 한다.

2. 출하량과 가격은 **어획 및 생산시기**에 결정한다.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경우 **생산지교구 추천, 교구간 협의 및** 도농협력모임을 통해 협의 조정한다.

3. 출하 가격은 물류 소비자 도착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 출하 제재/

1. 모든 회원은 전국본부에 회비 및 생명운동 기금을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전국본부 /교구본부 주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2. 모든 품목은 교구본부 가공식품위원회를 통하여 출하 요청하고 전국 가공식품위원회는 이를 도농협력모임과 논의하여 그 출하 여부를 결정한다.

3. 출하 제재는 1개월 출하 정지, 3개월 출하 정지, 영구 출하 정지로 나눈다. 출하 제재는 분과별로 논의하여 분과장이 이를 운영회의에 요청한다.

## 기름 기준

품 목	생 산 · 출 하 기 준
<p>생산 및 가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기름은 220도 이내, 들기름은 200도 이내에서 볶는다.</li> <li>- 국내산만 가공하고 각 품목별로 구분된 시설(압착기)에서 가공한다.</li> <li>- 찌꺼기는 제거하고 포장한다.</li> </ul>
<p>원재료 취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톨릭농민회 회원이 생산한 원재료를 우선 취급한다. 단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시에는 지역생산 원재료(원산지 증명서 첨부)를 사용할 수 있다.</li> </ul>
<p>시설 및 부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허가(식용유지가공) 시설에서 생산하고 품목제조신고를 하여야 한다.</li> <li>- 용기(병)는 갈색병을 사용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보관한다.</li> <li>- 부자재 공급업체의 자가품질검사서를 비치한다.</li> </ul>

[기름생산자모임 2011.7.5] [2차 생명농업실천위원회 승인 2011.11.7

2010년 3월 30일 가공식품위원회 총회 제정  
 2011년 4월 15일 생명농업실천위원회 승인  
 2012년 3월6일 가공식품소위원회 총회 개정